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8년 7월 30일
3. 정정사유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u>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u>	<u>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u>
제2조(용어의 정의)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7. (생략)</p> <p>8. <신설></p> <p>9. <신설></p>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7. (현행과 동일)</p> <p>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p> <p>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p>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u>"이라 한다.</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 (생략)</p> <p>6. <신설></p> <p>④ <신설></p>	<p>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u>"이라 한다.</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 (현행과 동일)</p> <p>6. 모자형</p> <p>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2.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3.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제4-1조(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선정)	<p>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선정</p>	<삭제>

	<p>할 수 있다.</p> <p><u>1. 운용업무 및 운용지시업무</u></p> <p><u>2. 조사분석업무</u></p> <p><u>3. 단순 매매주문업무</u></p> <p><u>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u></p> <p><u>③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p> <p><u>④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지급하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기일과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u></p>	
제4-2조(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p><u>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아문디 홍콩(AMUNDI Hong Kong)이다.</u></p> <p><u>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제4-1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p>	<삭제>
제4-3조(해외보관대리인의 선정)	<p>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u>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u></p> <p><u>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u></p> <p><u>3. 제1호와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u></p>	<삭제>
제16조(투자목적)	<p><u>① 이 투자신탁은 한국 및 중국, 홍콩, 대만 주식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9조제1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수익자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u></p>	<p>이 투자신탁은 제17조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삭제></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p><u>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u></p> <p><u>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u></p>	<p><u>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u></p> <p><u>1. 제3조제4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u></p> <p><u>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u></p> <p><u>3.~14. <삭제></u></p>

	<p>다) 및 이와 관련된 <u>법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u>에 의한 <u>증권예탁증권</u>(이하 "주식"이라 한다)</p> <p>2. <u>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u>(이하 "외국주식"이라 한다)</p> <p>3.~14. (생략)</p>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p> <p>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3.~8. (생략)</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제3조제4항 각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p> <p>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p> <p>3.~8. <삭제></p>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14. (생략)</p> <p>②~⑥ (생략)</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동일)</p> <p>2.~14. <삭제></p> <p>②~⑥ (현행과 동일)</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u>제4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u>증권</u>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u>제4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④ (생략)</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u>제2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동일)</p> <p>5. 투자신탁재산인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u>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u>제2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④ <삭제></p>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u></p>
제26조(환매업무)	<p>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u>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u>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u></p>

		자산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신설>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투자신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투자신

	<p>탁은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였으며 그 수수료는 투자신탁이 부담한다.) <u>다만, 제4-1조에 의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지급한다.</u></p>	<p>탁은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였으며 그 수수료는 투자신탁이 부담한다.)</p>
<p>제39조의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p>	<p><신설></p>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에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 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한다.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에서 각 모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 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한다.</p>
<p>제42-1조(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p>	<p>① 제42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당 결제비용 (transaction fee) 2. 보관 비용 (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 (out-of-pocket expenses :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p>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은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1달간의 비용을 결제한 날의 익월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제1항 제2호의 비용은 매달 말일자의 보관증권 가치로 계산하며, 말일자에 보관자산이 없는 경우 계산되지 아니한다. 동 비용은 제1항 제1호의 비용과 함께 청구되며, 제1항제1호의 비용 납부시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삭제></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p>	<p>③ <삭제></p> <p>③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p>

	<p>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8 년 7 월 30 일
3. 정정사유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모펀드 추가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추가(Amundi Asset Management, London Branch 투자자문)
 - 운용전문인력 변경(박주연 → 김현)
 - 비교지수 변경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u>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과 관련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며 중국 성장의 수혜를 받을 한국주식에도 투자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추구</u>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u>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각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u>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과 관련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며 중국 성장의 수혜를 받을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의 추구를 투자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신설>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해외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각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p>◆ 기본투자전략</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p> <p>①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②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③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요약정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3. 운용전문인력</p>	<p>해외투자본부: 박주연</p>	<p>해외투자본부: 김현</p>
<p>요약정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3. 위험관리</p>	<p>- 외화자산의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예: Forward계약 등)을 이용한 환헷지 전략을 수행합니다.</p> <p>- 환헤지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국가의 현재 환율과 통화선도계약의 기준이 되는 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환헤지비용이 발생합니다.</p> <p>-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에 준하게 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p> <p>①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②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③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p>	<p><신설></p>	<p>-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p>
<p>제1부. 4. 집합투자업자</p>	<p><신설></p>	<p>(3) 투자자문업자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Amundi Asset Management, London Branch'의 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투자자문업자 개요> (이하 생략)</p>

제1부. 5. 운용전문인력	해외투자본부: 박주연	해외투자본부: 김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u>모자형</u> (2)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과 관련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며 중국 성장의 수혜를 받을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의 추구를 투자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u>해외 및 국내</u>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각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생략)	모자형 구조로 변경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80% 이상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1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신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China(35%)+MSCI Hong Kong(35%)+KOSPI(30%)]×90%+Call Rate (10%)	모자형 구조로 변경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China(65%) + KOSPI(25%) + Call Rate (10%)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생략) - <신설>	가. 매입 (1) 매입방법 -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u>

	<p>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생략) - <신설></p>	<p><u>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u></p> <p>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현행과 동일) -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신설></p>	<p>※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에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 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한다.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에서 각 모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 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한다.</p>
<p>[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신설></p>	<p>1.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울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2.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3.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p>	<p>-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p>	<p><신설></p>	<p>-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p>	<p>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u>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제 5 부. 3. 나. (2) 수 시공시</p>	<p><신설></p>	<p>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8년 7월 30일
3. 정정사유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모펀드 추가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추가(Amundi Asset Management, London Branch 투자자문)
 - 운용전문인력 변경(박주연 → 김현)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요약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u>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과 관련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며 중국 성장의 수혜를 받을 한국주식에도 투자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추구</u>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u>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각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u>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과 관련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며 중국 성장의 수혜를 받을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의 추구를 투자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신설> ◆ 기본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해외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각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p>(이하 생략)</p> <p>②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이하 생략)</p> <p>③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이하 생략)</p>
<p>요약정보</p> <p>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p> <p>(1) 3. 운용전문인력</p>	<p>해외투자본부: 박주연</p>	<p>해외투자본부: 김현</p>
<p>요약정보</p> <p>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p> <p>(2) 3. 위험관리</p>	<p>- 외화자산의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예: Forward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p> <p>- 환헤지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국가의 현재 환율과 통화선도계약의 기준이 되는 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환헤지비용이 발생합니다.</p> <p>-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에 준하게 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p> <p>①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이하 생략)</p> <p>②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이하 생략)</p> <p>③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이하 생략)</p>